

## 14. 기타 지방세법상 미비점 개선·보완사항

지방세법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한 내용에 대하여는 각 조문별로 그 개정내용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 1)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 위임 등에 관한 규정 정비(법제4조)

중전의 규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법에 규정된 그 권한의 일부를 소속공무원에 위임하거나 그 관할구역내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주행세의 경우 관할구역외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특별징수하고 있으므로 동 규정을 관할구역내는 물론, 관할구역외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도 권한위임이 가능하도록 개정하였다.

### 2) 증가산금 적용대상 체납액 상향조정(법제27조, 영제13조)

지방세 증가산금 제도는 '88.12.26. 개정된 것으로 그 동안 과세표준 및 세액 단위가 상승하였음에도 조정되지 않아 증가산금 징수에 따른 인력·예산·시간 등 징수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고 있어 이를 상향조정하여야 한다는 시·도의 건의를 수용하고, 국세(50만원)와 지방세의 증가산금 적용 기준금액이 서로 달라 불형평하므로 납세자의 권익보호 측면에서 지방세 증가산금 적용제외대상 금액을 중전의 10만원미만에서 30만원미만으로 상향조정하였다.

개정된 증가산금에 대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의할 점은 개정 지방세법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1.1.1이후 최초로 납기가 도래하는 것부터 적용한다는 것이다.

### 3) 가산세 적용제외 대상 근거규정 신설(법제27조의2)

지방세의 신고납부 불이행 등으로 부과되는 가산세의 본세의 세목<sup>25)</sup>으로 한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체납된 경우에는 가산세 과세대